

제 1332회 임시國會本會議 속기록

▲의장 李載滯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상원의 되었으므로 제 1
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朴鍾哲사망사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장관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金聖基 지난 1월 14일
서울 용산구 감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
2부 건물 조사실에서 서울 대학생 朴鍾
哲군의 조사를 받던 중 불행하게 사망
한 사건의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은 국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감독자
로서도 국정의 책임임을 맡고 있는 국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
씀을 드리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일 변사사건발생보
고를 받은 즉시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
성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그 진상
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야 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사체를 부검
하기로 하고 1월 15일 21시 5분부터 22
시 25분까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서
울지방검찰청 검사 安商守의 직접 지휘
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黃迪
駿박사의 지도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당직의사 朴東皓박사, 朴鍾哲군의 유가
족인 숙부 朴月吉씨의 입회하에 면밀한
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되어 동일 11시 20분경 경부암막으로 인
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입니다.

이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은
1월 24일 趙漢慶 姜鎭圭를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 형
사지방법원에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의장 李載滯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
와서 먼저 신임인사를 하고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溶 기본적으로 사람
은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
식할 때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
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의 바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는 결코 변
명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우리 경찰이 진정 새로 태어난다
는 각오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어떠한
가혹행위도 우리 경찰조직에서 영구히
추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건경위는
방금 법무부장관께서 보고드린 바와 동
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치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먼저
朴鍾哲군은 86년 7월 15일 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에서 불변가두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중에 있던 학
생으로서 계속 각종 학생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서울대 민주위사건 관련 중요
수배자인 등 대학 朴鍾雲과 연계하여
소위 전국학생운동지도부라는 좌경조직
에 관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1월
14일 6시 40분경 趙漢慶 등 치안본부
대공3부5과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6의 26소재
하숙집에서 동일 7시 10분경 조사실로
임의동행되었습니다.

동 조사실에 도착한 후 趙漢慶이 인

▲金鉉圭의원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그리고 朴鍾哲군 고문살해 관계
장관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이 자리가 병치레를
모르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속에
서 받고 못꿨던 21년 생애를 용기화
한 공권력에 의해 빼앗긴 채 이 못한
조국을 원망하며 배회하고 있을 朴鍾哲
군의 영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준엄한
명령과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침묵의 말들을 경청하는 자
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
리에 참석한 장관들의 솔직한 심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밝고 건강
한 이 나라의 젊은이 朴鍾哲군이 죽었
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죽은 것은 반군
이 아니라 현 정권의 통치기반과 그리
고 이것을 지탱해 온 윤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지난 81년 3월 3일 제 5공화국 제 12
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취임사를 통해
정치적 탄압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 그리고 헌법의

적사항 등 간단한 신문을 하고 아침식
사와 휴식을 취하게 한 다음 동일 10시
50분경 趙漢慶 姜鎭圭 등 2명이 한 조
가 되어 朴鍾哲군의 과거 각종 시위주
도혐의, 서울관계, 朴鍾雲의 소재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던 중 朴鍾哲군이 사
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동일 11시 10분경 趙
漢慶은 姜鎭圭에게 그 조사실 안에 있
는 길이 1백 23cm, 높이 57cm, 폭 73cm
의 인조대리석제 목욕탕에 물을 채우게
한 뒤 朴鍾哲군의 상의를 벗기고 목욕
탕 앞으로 데리고 가서 姜鎭圭는 양팔
을 朴鍾哲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목 뒤에서 각지를 끼고 머리와 상반신
을 누르고 趙漢慶은 왼손으로 머리카를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세게 눌러 물
속으로 밀어넣고 약 1분 내지 2분후
끌어내어 약 20초 있다가 다시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자 朴鍾哲군이 심한 몸
부림을 치면서 머리를 물위로 들려고
하므로 姜鎭圭는 발과 무릎으로 朴鍾哲
군의 상반신을 강하게 밀어 조이고 趙
漢慶은 다시 머리를 수분간 물속으로
누르는 동안 朴鍾哲군의 목이 높이
57cm 너비 6.5cm의 유조직에 눌리게

명민공정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야수적 행위이며 민주 국가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 인권유린행위이며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인 이같은 전근대적 고문행위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실험이라도 하듯이 나라 각급 수사기관 본실별 관의 밀실에서 끊임없이 자행되어 왔으며 특히 학생과 민주인사 등의 대한 무자비한 고문행위는 부도덕한 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은 심지어 바로 이 자리에 서서도 '가혹행위자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가증스러운 위증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세분 장관중에 누구라도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두 개의 표적중 하나인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이제는 선진조국 민주복지국가라는 목소리가 무성한 이 나라에서

구결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왜 로부터 푸근치하의 백성은 푸근보다 훨씬 거칠어지며 모든 폭력은 상대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상대를 순종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는 폭력과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유독히 소리를 높이고 창문 현 제 5공화국에 들어 유독히 폭력과 탄압이 만연 창렬하고 아니 오히려 폭력과 탄압이 정권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현 정권의 폭력에 의한 탄압은 현 5공화국의 국정지표와 모순되는데 이 점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학자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 정권은 폭력으로 점철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릴 때 새집을 다친 놈은 커서 마을을 태운다'는 식으로 이제는 만사를 물리적 폭력이라는 역리에 의존하는 정권이 되었읍니다.

우리 동료 兪成煥의원은 감우의 면회 가서 '고생 많지요?' 하고 위로하는 동료의 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편이다 감우인데 어디에 있건 큰 차이가 있나요 괜찮습니다...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야만적인 고문살인 사건 발생 30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유죄 호도 하려

니다.

형사소송법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출선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구속사실을 가져 주든 보호자에게 봉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에 의할 때에는 이러한 조항이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의 형식을 띤 불법연행과 이에 따른 보호유치는 구속과 같은 실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조사라는 미명 아래 피의자에게 구속보다 더 가혹한 불의의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조사기관의 불법적인 탄압과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가 바로 이같은 탈법 상황에서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읍니까?

▲李泰模의원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몇 명의 수사관이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면서도 구조적으로 일어난 제도적인 폭력으로서 결국 정권에 의한 폭력적 사안으로 단정하자는 바입니다. 법의 제도적 장치가 있음

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않았고 광치니 까 의하고 쓰러져 소크사했다고 하는가 하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고 의지를 썼읍니다. 부검이 끝나기도 바쁘게 사인도 밝혀지 않은채 유일한 물증인 사체를 화장했고 영안실에서도 형사가 유족대표로 위장하여 기자들을 내 쫓아 보냈읍니다. 검찰은 왜 이 사건 조사도중에 경찰 자체조사에 맡겼는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법무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부의 거짓으로 말미암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정부에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의원은 불화와 갈등으로 가득찬 이 시대를 보면서 본인이 정치의 길에 나서게 된 것에 가슴길 없는 회한과 함께 兪오르든 분노를 참으면서 서울대학교 입학과 3학년 朴鍾哲의 스물한살의 젊은 나이에 체포어나지도 못한 꽃봉오리로 떨어져 간 그의 짧았던 삶과 고귀한 죽음을 우리 모두의 삶과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으면서 본의원의 전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

에도 불구하고 고문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고문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비호되고 자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공화국의 출범된 이후 두 번에 걸친 고문치사사건의 발생했다고 하든 이 엄연한 사실은 이 정권의 문자 그대로 고문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치권력이 고문정권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정권의 정통성과도덕성을 상실한 반민주적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천적인 방안은 정권을 민주화하고 언론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의 필 것입니다.

고문의 정권연장을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朴鍾哲의 사건역시 정권유지를 위한 정권변형으로 보는 국민적 평가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고문퇴치를 위한 본질적 대책은 무엇인지 내부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일말없는 수사를 통해서 고문 만행을 저지를 두 경찰관을 끝까지 비

사합니다.

▲金重權의원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중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의면한 채 부정당한 수단까지 동원해 가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불법 폭력으로 짓밟고 앓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실로써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행법상의 각종 제도 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손색이 없이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주의적 소수결처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인권보장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영장없이 구속되지 않는다」 고 하는 이런 인권보장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사관들의 지나친 직무의유이나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

호하고 있습니다. 옹공 과정으로 몰던 수많은 학생 특히 여학생들마저 수갑을 찬 비참한 모습을 신문 지상과 TV 화면에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검찰이 이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감과정에서부터 어찌해서 가면을 둘러 씌워서 위장시킨 것뿐만이 아니고 교도소 출장조사와 중간발표의 생략등 완전한 비밀수사로 일관한 것은 우리 검찰의 반민주적 수사작태를 노정할 표본적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온 국민의 격분을 외면하면서까지 두 경찰관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범인의 실체와 수사기록등 사건일절을 국민앞에 참되게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검찰과 사법부가 결탁하여 고문사건을 부인한 바 있는 金權泰씨 사건이나 권양의 성고문사건 등 모든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앞에 밝힐 용의가 없는지 법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燦鍾의원 저는 지난 1월18일 토요일 오후 2시반경에 부산시 서구 피

학원의 책임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朴燦鍾군의 대학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태 이후에 피해자로서 문교책임자로서 선배로서 사과나 해명이나 대책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동지 여러분! 제가 무엇을 묻고 무슨 답변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사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이 불안하고 아무도 미래예측을 할 수 없는 심지어 全斗煥대통령 자신도 미래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속에서 해결책을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민주화없는 이 위기극복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인데도 집권세력은 여전히 물리적인 힘으로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에 맞서서 이 반대되는 세력은 순리와 상식으로 해결이 불가능이라고 믿고 그 가능성 때문에 힘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가서 증가일로에 있고 이 나라는 드디어 계속 감옥이 만원사태가 되는 이 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속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朴燦鍾군 고문

정동 사립암이라는 암자에서 朴燦鍾군 어머니와 그의 누이 朴恩淑양을 어떻게 상면하였습니까.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웅전에 그의 영정과 제사상을 모셔 놓고 벌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모녀를 만났습니까.

여기 우리 文正秀의원과 같이 우당의 조의를 전하고 조위금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간신히 찾아 갔습니까. 먼저 절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님 종철이가 부산토성국민학교 알고 보니 내 후배고 대학을 마저도 내 후배고 성도 같고 이래서 저의 충격은 대단히 큼니다. 무어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종철이의 영혼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몸을 던져서 이 재발방지를 하겠습니까.

한참을 있다가 그 누나 은숙양이 「박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몸을 던져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느냐」하고 반문했습니다.

지사사건이라고 얘기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물리적 폭력이 시행하고 살기등등한 이 권력유지의 방편에서 생겨진 일련의 상황의 한 증표로서 일어난 일이지 단순히 학생 하나가 대공본실에 끌려가서 경찰관의 직무의욕으로 과잉의욕으로 피살되었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군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결과와 누구 말마따나 뜻밖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박군이 죽음을 당하기까지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고문학손상황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공치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끌려가서 이러한 고문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수 없이 뜻밖에 박군처럼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파헤치고 이 상황을 논리적이고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론을 불신하는 것은 첫째로 사체부검에 관한 것입니다. 사체를 부검한 黃迪駁의사는 처음에 경찰은 한양대학교부속병원의

법무부장관! 초등수사를 포기하고 범인없는 범인 얼굴없는 밀실수사를 했고 경찰의 2차 발표에 깨어맞춘 수사관을 해서 검찰권을 포기해 버린 그 지휘관으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제가 무엇을 묻고 장관에게 어떤 이 사태의 광경을 위한 답변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교부장관! 거기 계시지마는 장관께서는 이 사태의 피해자와 일정에 선

사인양 위장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치안본부장의 실질적 지휘를 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의 의사예요.

1월15일 저녁 9시15분 박군의 시신을 부검하기 직전에 직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尹重鎮씨와 黃迪駁씨가 치안본부건물에서 대공담당 5차장과 수사담당 3차장과 장시간 면담 속의 한 사실이 우리 신민당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무엇을 속의했습니까? 또 경찰이 임회인으로 발표했던 朴東皓의사는 한양대학교 단일 당직의사로서 그의 전문과목은 마취과야! 우리 신민당 조사단에 게 말하기를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부를 해본일이 없노라, 짐사가 임회 하라고 그래서 꾸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양복은 세탁하면 되지만 인간은 세탁로 뽐니다. 나는 정부 여당 동지 여러분들에게만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야당도... 우리 야당도 이 사태의 예방에

당도... 우리 야당도 이 사태의 예방에

최선을 다했던가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11명의 가족이 읍니다. 일본 헌지에 국공영방송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앵커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자유가 그리워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앵커맨이 가야 합니다. 거기에 앵커맨이 가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신속들이 알리는 그 노력의 3할정도만 박군 사건과 이 상황을 극복하는데 정부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朴鍾哲군의 시신을 태운 그 재가 보도에 의하면 그 부모가 임진강 물에다가 아버지가 '중철아 잘가그래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데이'하고 물에 뿌린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임진강은 공공얼어 붙어 있었읍니다.

따라서 중철이의 그 육신의 흔적은 그 얼음바다에 부딪혀서 강바다에 눈보라가 되어가지고 서해에 흘러가지도 못하고 구만리 창공을 날으면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의사당 상공도 맴돌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87년 1월16일에 장래를 치부었읍 뿐입니다. 추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증거인멸 등의 뜻은 전혀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예의에 어긋나졌읍니다마는 朴軍은 참고인으로서가 아니라 범죄혐의가 있어서 연행한 것입니다.

朴燦鍾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정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朴의원님의 말씀은 좋은 가르침으로 알고 사랑받고 신뢰받는 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무부장관 金聖基 金鉉圭의원께서 고문행위에 대하여 가장차별하는 특가법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법에 의하여 임진 처벌한 경우가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규정은 1983년 12월 31일에 신설된 것으로서 이 규정 신설 이후 현재까지 도합 19명을 임진하여 그 중 11명을 기소하여 임중처벌하였고 8명을 증거불충분등 사유로 불기소처분하였읍니다.

다음 金鉉圭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이 영혼을 잠재우는 방법은 아까 어떤 동료의원께서 이것을 헤집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를 두번 죽일수 있는나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거꾸로 이 고독한 영혼을 우리가 거두어주기 위해서는 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주고 왜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할말이 없데이'하고 무형의 고문을 당하고 있을수니까? 아버지는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문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 鄭鎬溶 朴軍 조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초기에 그 실수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 사건의 진상을 은닉할 의도하에 상부에 사건을 지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사건의 정확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의 상태였으므로 담당수사관들의 신빙성있는 보고내용을 그대로 언론에 전하면서 사건의 진상의 정확히 조사되는 대로 전모를 밝혀겠다고 말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重權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鍾哲군의 연행시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수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李奉模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도 처음 직원의 허위진술을 믿었다가 자체조사결과 朴軍을 조사한 趙漢慶 姜鍾圭등 2명이 가혹행위를 하여 朴軍을 치사케 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지휘를 요청하면서 다만 이 사건이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부족에서 빚어진 과오임을 시인하면서 일단 실추된 10만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찰 스스로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해 왔읍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전모는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사건수사에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경찰로 하여금 피의자들을 즉시 구속하여 그 다음날 바로 송치토록 지휘하였던 것이며, 1월16일 이후 1월19일 구속시까지 4일간에 걸친 경찰수사에 있어서도 모두 검사가 구체적으로 수사를

은 87년 1월14일 오전 6시40분경 신림동 朴鍾哲군의 하숙집에서 연행되어 대공분실 조사실에 7시10분에 도착하였읍니다. 최초 경찰발표인 8시10분 도착은 조사결과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읍니다.

다음 수사경찰관의 朴軍을 고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국 수사경찰관의 인권보호의식의 미흡과 업무에 대한 과욕 그리고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朴軍의 주요수배자를 은닉하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朴軍이 이를 사실대로 답변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관이 이성을 잃고 일으킨 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奉模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鍾哲군을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셨읍니다.

87년 1월15일 부검을 마친 후 朴軍의 부모가 불교신자로서 일반적 장례의 관습인 3일장으로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을 바라고 있었읍니다. 이 원인으로

시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인 1월20일 바로 송치를 받아 그간 수사에서 수집한 제반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면밀히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의원께서는 피의자 출석없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장검증이나 실태조사는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의 일종으로서 모든 사건의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거나 또는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검사의 검시결과 및 부검결과에 의하여 朴軍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이 명백하여 구태여 피의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범행을 재현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의자들의 참여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李의원께서는...

(장내소란)

▲내무부장관 孫鍾鑾 朴燦鍾의원님께서 조금전 질의시에 본인들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만 朴軍의 죽음에 관한 한 백번 꾸짖어도 할 말이 없고... 오직 유

구무원의 심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朴鍾哲군의 명복을 빌고 朴군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李奉模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朴鍾哲군 사망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좌경화 극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朴군 사망사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金鉉圭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이 학원의 소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좌경의식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이념사상교육을 더욱 체계화하여 강화하는 한편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국민윤리의 내실화는 물론 정치 경제 군사 철학 등 이념사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강좌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

미가 우리의 상황속에서 우리의 현상황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하고 정말로 시정하는 의지가 실질적 태도가 필요한데 정부 여당 거리가 너무 멍니다. 정부 여당은 가해자 측이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측인 그 죽음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피해자측에 대해서 오늘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뭐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추도위원회를 준비한다 하니까 무슨 연금을 하고 무슨 최후담까지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방방곡곡에 설치된 분향소를 칠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더 그리고 현수막을 칠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임 鄭장관! 당신은 취임하면서 언필칭 순리와 상식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해자측이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분노하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것거리들이 당신의 상식이요 당시의 순리란 말입니까? 대답해 주시요.
솔직히 말해서 시중에는 4.19전에 金朱烈의 죽음과 이번 朴군의 죽음을 연관시키는 사람들의 늘어나고 있음을

우경체제제의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이 에 도전하는 제반 좌경급진이론의 허구성을 특히 소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최근 자본주의제도를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실상을 소개함으로써 판단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념교육이 모자라서 朴군이 죽었어요?) 하는 이 있음)

▲李永旭의원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범죄의 수사는 그 성질상 비밀을 요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 장소는 모든 국민이나 언론 기관이 감시가능한 공개된 장소가 마땅하며 그 장소가 지나치게 비밀을 강조하다가 보면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몰지각한 자의 폭행 등 고문에 이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견지에서 경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사본질·별실 등의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에서는 중요사건 검거시마다 1계급 특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근간 경찰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범죄방지 투쟁에 임하고 있음을 볼 때 수사의 능률을 높

정부가 여당은 차례차례 알아 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고문사건의 수습으로 등장한 鄭내무부장관· 鄭장관은 광주살상 당시 관련 부대의 상급 총책임자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가요? 당시 직책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주의 잘못에서 다시 태어났노라, 따라서 이번의 수습장관으로 제대로 일을 해내겠노라,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장관의 진술을 보고 많은 국민중에 산님이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 줍니다. 그리고 鄭장관은 방금 답변에서 죽은 朴군이 피의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죽은 朴군이 수배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는가, 그 번호가 몇번인가 그리고 피의자로서 입건되었다면 정말로 입건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죽은 朴군은 전혀 숨어서 생활한 것이 아니었고 불면증이 생활을 했습니다. 결코 종전에 계속된 수배대상자로서의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검찰

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일리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되나 다른 면에서는 검거에 과열된 나머지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고도 보는데 이런 견지에서 이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張基旭의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정권의 출범은 하자가 있었으며 사악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과연 그러한 악마로부터의 초월함, 다시 태어남이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朴군의 죽음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일련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 조치가 극히 미흡하다는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멍니다.
우선 첫째로 진상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진실만이 정의요 진실만이 힘의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검찰은 그것을 호도하려 합니까? 그리고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해서 그 진상을 밝혀줬다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얼마를 숨겼기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의

에서 그를 참고인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일종의 증거 말해서 중인이 옳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부친성고문사건에서도 權양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자기의 업무를 도와주어야 할 참고인을 의지로 끌어들이다... 일정한 장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놓고 불법감금이 옳습니다. 그대놓고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고문을 한다. 남학생에 대해서는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은 경찰이 과연 할만한 일인가? 참으로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金聖基 범무부장관! 중간에 고문의 정의를 검토해 봅시다. 범문사, 법률학 사전 67 페이지 고문이라고 보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을 주는 것을 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고문의 權양, 그리고 이번 사건의 朴군 모두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한 소제를 알기 위한 참고인인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까지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학사전에 있는 고문의 정의가 틀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경찰의 고문남용이 피의자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증인에 이르기 까지 확산되었으니까 고문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어를 창조해야 하는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원은 이 법률사전 장관에게 전해 주기 바랍니다. 鄭장관! 고문과 독재와의 관계에 관해서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독재정치가 없는 데에서는 고문이 없습니다. 정치상황이 독재에서 종식되지 않을 때 고문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장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직무과육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혹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야 된다는니 등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문하는 것을 놔두는 것이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처음 거짓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서 틀림없이 만일 차관이 밤에 죽었다면 바다 밑이나 산중에 혹은 철도변에 그 사체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吳演相의사의 발언이 우리 신민당조사위원회에 일찍 청취되지 않았거나 후

은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소위 말해서 무슨 「탁」 「룩」 「우」 이렇게 자연사로 처리되었을 것이지요. 내무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찰은 검사의 검시전에 시체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놓고 뒤늦게 보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최초로 보고한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병원을 만났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시체를 경찰병원에서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 신민당 조사단에 증거인을 했습니다. 경찰관장하의 경찰병원에 시체를 숨겨놓고 진장을 조작하려 한 자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고문과 물고문의 도구인 분실의 침대소위 침상대라고 그러합니다. 또 호텔도 아닌데 방마다 육조와 화장실이 것 왜 설치했습니까? 그 설치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국사범문제는 정치를 잘 해서 풀 생각은 없고 현상관용입니다. 이러한 학생 등 시국사범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보로금급 준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국정을 집행하고 법으로 정부를 이끌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81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죄무수행의 좌우명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정당도 당이념인 민주주의와 정의구현의 일환으로 이같은 풍토의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요원에 의한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실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문관련 경찰관의 즉각 구속과 해임, 치안 책임자 및 관계장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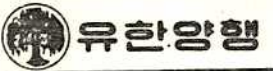


간장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보!

해독은 물부터 간세포 회복까지

해독 · 회복간장약
리카바

표준소매가: 100정 / 27,000원



정치 도의적 문해, 정부당국사의 대국민사과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조치를 즉각 강구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각계각층 지도급인사들로 고문사건의 재발방지와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토록 내각에 지시했으며 내무부에서는 수사요원관리규정 제정과 수사요원에 대한 통제강화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단호하며 깊이 자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정직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의 진면목을 국민앞에 보여준 것이며 초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민주발전의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실거일전하여 새로운 국민을 열어가야 할 시국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87년을 참다운 개혁의 해요 이 나라 민주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민주헌법의 되도록 힘모아 노력합시다.

▲법무부장관 金聖基 전류접촉부위에 전류반 즉 탄화현상과 그 둘째에 흥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결과 차관의 경

최근 5년간 그러한 형태로 낭비된 국고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文國顯교수가 지은 최신 법의학 1백 19페이지에 보면 「전류반은 습기가 많을 때 적게 생긴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전기고문은 물고문과 함께 하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분실의 침대소위 침상대를 거친 술한 사람들의 증언 역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차관의 몸에는 많은 부위의 혈종점이 전류반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것인지 잘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上野正吉교수가 저술한 신법의학 책을 보면 전기작용이 있으면 폐실질의 소출혈이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본해 왔으니까 1백 29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관의 폐에 있는 그 혈종점 그것이 바로 그 책에서 말하는 폐실질의 소출혈이 아니고 뭐냐 이것입니다.

▲朴敬錫의원 주사煥대통령께서는 일찌기 81년 3월 3일 12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치적 강압과 권력남용이 이 땅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로



당신은 몇인분으로 통합니까?



마른 장작이 화려 좋다니... 강한 체력과 남다른 일욕심을 가진 직장의 슈퍼스타 3인분씩,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생겨난 병명은 아닙니다. 연이은 야근에도 끄떡없는 참치요리 꽤나 즐기시는 미식가이십니다.

성인병 예방의 EPA와 制癌 效과의 세레늄까지 듬뿍 들어있는 참치는 고단백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모두 식사와 체중은 1인분, 업무능력과 성취는 3인분이 됩시다.

* EPA : 혈액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콜로화 지방산 혈관벽의 노화를 방지하므로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 **동원참치** 鮮 킨
자매품: 양반김/오대감구이

잡기 위하여 수사관들의 사기양양 목적으로 현상금과 1계급 특진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사관의 과욕이나 지나친 공명심으로 무리한 직무수행 또한 인권 보호의식의 미흡 수사기술의 미숙 과학적인 수사방법의 결여 등으로 고문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이 문제는 재검토를 하였습니다.

張基旭의원께서 서두에 광주시태시에 본인의 직책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직책은 온갖 의제와 전문 관련이 없는 직책이라고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본인은 특전사령관으로 작명에 의해서 본인이 지휘하던 사령부 관하의 7개 여단 중 3개 여단을 광주시태에 진압을 위하여 전담도 지구 책임사령부에 작전 배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배속이라는 뜻은 모체부대가 특전사령부이나 배속된 이후에 모든 작전권과 사령권은 책임사령부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태에 관한 본인의 심정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이 당시 희생된 많은 광주시민 및 군경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있음을 밝힙니다.

차관은 수배자 명부에는 등재되어 있

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고문과 독재정치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문과 독재정치가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인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은 고문이나 독재 등 비정치적 방법은 어떤 정치 상황하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吳演相의사의 증언이 없었다면 자연사로 처리했을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수사중이던 피의자의 사망사실을 보고받고 사망경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자체감찰을 동원하여 1차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바 고문치사의 혐의가 질여 자체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19일 관계

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고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명백히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張基旭의원께서 폐출혈점에 관한 질문하셨는데 이 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사체를 부검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黃油駿의 감정소견에 의하여 폐 조직검사결과 박군의 폐상부에서 폐결핵으로 인한 결절이 발견되었으며 위 반점은 박군의 상체를 육조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가 육조력에 부딪힐 때 큰 충격으로 결절이 파괴되면서 이로 인한 폐출혈로 반점이 생긴 것이라고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의원께서는 경찰의 수사분실별실동에 대한 감찰사항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수사분실은 유치장이 아니고 조사장소이므로 유치장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와 관련하여 불법수감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치장감찰시 철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張基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의원님께서서는 법률학사전에 의하면 고문은 피의

자나 피고자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인에 대한 가혹행위도 고문에 해당한다고 물으셨습니다.

張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법 제125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드시 피의자 피고인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張의원께서는 학생등 시국사범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사권을 조작 검거한 경찰관에게 국가보안법상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유공자에 대한 상금지급은 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체포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신고한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국사범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조작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한 건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 張의원께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고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결과를

漢慶 등 2명이 차관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자 순간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가혹행위를 가하다가 사망한 것이며 살인의 범의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내무부장관 鄭錫溶 우선 李永旭의원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첩 등 국가주요사범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범의 수사는 경찰관이 아닌 대공본실이라든가 여관호텔등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의 감독하에서 조사가 되도록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요사건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1계급 특진 등 특진혜택을 주는 것은 고문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현재 치안본부에서 수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어떤 학생이나 선량한 학생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거나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열렬히시는 의견은 충분히 수용

경찰관들을 구속한 것입니다. 자연사 등은 폐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검시전에 시체를 옮겨 경찰병원에 숨긴 이유는 무엇이나 하는 물음이 있었읍니다.

조사관들이 중앙대병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경찰병원으로 옮긴 바 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박근을 살려야 하겠다는 집념에서 1차 가까운 중앙대학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앙대병원에서 이 미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사체처리에 따른 비용문제 때문에 경찰병원으로 옮긴 것이며 시체를 숨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박근의 사체부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가능하면 감정사본을 제출하도록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의 사체부검 결과의 의표점사소 전상 안면부에 3개소 좌우상지에 3개소 좌측 사타구니에 3개소 좌우하지에 6개소등 전부 15개소의 와상 흔적이 나타났고 내경소전상 두부 7개소정부에서 근육간 출혈의 흔적이 각각 나타났으며 병리조직검사상 활동성 폐결핵 병변이 다소 발견되었으며 이상의 제검사와 정부의 근육간 출혈 안면부 출혈

반죽 탄화현상과 그 둘레에 혼반이 생기게 되는데 부검결과 박근의 경우에는 신체 어느 부위에도 그와 같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기고문은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다음 박鍾哲의 머리에 깔 다리 허벅지 가슴부분등 10여군데에 피하출혈 등이 있었는데 부검의 黃迪駉의 진술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의 상 등을 趙漢慶 등이 박鍾哲의 머리를 물 속에 넣어놓을 때 그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육조변에 머리를 부딪치고 무릎과 다리를 좌우로 뒤틀면서 육조 바깥변에 부딪치는 등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인정되며 趙漢慶 등이 육조에서 가혹행위를 하기 전에 그를 구타한 사실에 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고 부검의 黃迪駉도 피하출혈의 색깔로 보아 위상해들이 같은 시기에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달리 이전에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건에 관해서 전기고문 등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기고문시에는 전류 접촉부위에 전류

▲법무부장관 金聖基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순순히 응했거나 이렇게 물으셨는데 연행한 시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시40분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때 경찰관 2명이 사안을 설명하고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거기에 저항없이 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건에 관해서 전기고문 등에 관한... (장내소란) 답변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한 전기고문 등에 관하여는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기고문시에는 전류 접촉부위에 전류

679 자료4 제132회 임시國會本會議속기록

상 및 안결막의 점상출혈 허골의 돌출, 폐장에서의 폐기종상 소견을 동반한 무기폐등의 특징적 소견을 근거로 해서 박근의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료 인정됩니다. 부검에 대한 감정서 사본제출은 앞서 법무부장관의 답변과 같이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조실에 화장실과 육조를 설치한 이유는? 하는 물음입니다. 국가 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은 보통 20일간의 걸쳐 조사를 받게되나 구속 피의자로서 일반 목욕탕 시설을 활용할 수 없고 피의자의 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 사실내에서 신문관의 입회하에 목욕 또는 대소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張基旭의원 보충질의시간이 짧으므로 간단히 몇 마디만 보충질의하겠읍니다.

장관계서는 저항없이 순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가 아니라서 그래서 기소를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방송에 경찰서로 자가고 그래서 마음 순순히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

부 보도에 의하면 연행도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발표와 보도가 있었어요. 그 의상의 일부는... 그렇다면 분명히 박鍾哲은 그의 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불법체포가 아니에요? 영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긴급체포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세번째로 내무부장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상이 열다섯군데 정도 있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것을 알아들었는데 무슨 이런 등등 피의자가 있다고 그러합니다. 응혈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론 고문하는데 왜 응혈점의 바깥에 생깁니까? 물이 무슨 펜대입니까? 물이 무슨 동동이입니까? 물이 전기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 수사결과 의상으로 나타나는 피멍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들이가? 수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김성식군 서울대 경영학과 노현숙 이남희 민병두은 순이선희 이승환 이명식 김정환 김성혁 방창운 정홍석 김유림 주상백 강인자 구인희 윤성구 하은숙 이호관 최민목 박경... 수부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답변은 왜 안 하는 거요? 장관! 하는 이 있음

▲내무부장관 鄭錫洛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 박鍾哲군의 사인을 자연사료 은폐할 의사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의 심정으로서는 직접 고문을 해서 박鍾哲군을 사망케 한 두 수사관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면해볼까 하고 아마 거짓말을 최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미루어 보아서 이 두 수사관은 무엇인가 자기의 처벌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은폐를 해 보자고 한 의도가 확실해 있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도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폐의사는 전연 없었고 그림으로 해서 그것이 가혹행위에 의해서 치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오늘날 진실되게 밝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李載滌 그러면 이것으로 박鍾哲 사망사건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한 답변은 왜 안 하는 거요? 장관! 하는 이 있음

■ 朴鍾哲군 사건 관련 資料集 ⑤

제 1332 회 임시國會 內務委 속기록

▲黃瑤周의원 고문으로 살해된 고 박鍾哲군의 사인이·물고문에 의한 경우 암박질식사라고 하고 열다섯 군대의 명과 심한 상처는 물고문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본위원은 참을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학생이 아무도 없는 밀실에 서 그런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발버둥쳤기에 그렇게 온 몸에 심한 멍이 들고 상처가 났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인통해서 나도 모르게 배갓잇에 젖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변호사이며 국제 엠네스티 집행위원회의장이었던 맥브라이더

화하고 있다는 것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 박군의 사망원인이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박군의 목이 육조턱에 눌리어 질식사였다는 검찰과 경찰의 발표는 많은 의문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경부암 박질식사라고 했지만은 박군의 부검을 직접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는 지난 22일 우리 신문다. 진상조사반에 대한 증언에서 『부검결과를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그런 발표를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과학 수사연구소의 발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尹重鎭소장도 치안본부에 경부암 박질식사라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인발표를 할 수가 있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온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와 사인을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부검결과와 사인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지? 없다면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는 『고문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는 정치권 후진국들은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 자백을 통치의 근거로 써먹고 있다』고 정치고문의 속성을 파헤치면서 『이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고문을 반정부적인 국민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반대사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쓰고 있다.』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지지없이 통치하는 자들이수록 정권유지를 위해 고문을 효과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정권하에 상습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정치적 고문은 첫째 이 정

장관! 그나마도 부검을 받았던 이 황박사는 폐의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발표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부검결과도 내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여 그러한 발표를 할 수가 있는나고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황박사는 박군의 사체에 입술과 코가 끼인 흔적이 있었고 좌측대퇴부에 두 줄의 상처가 나 있었고 무릎 뒷부분에 상처가 나 있었고 왼쪽 장딴지에 엄지 손가락 반만한 크기의 멍이 있었고 오른쪽 엄지에도 2개의 멍이 있었는데 둔한 물체로 맞은 흔적 같았 고 오른쪽 팔 뒷부분에 멍든 자국이 있었으며 왼쪽 뒷목 부분에 주사바늘 2개가 꽂힌 흔적이 있었고 땀통수에 출혈과 이마에도 피하출혈이 있는 등 머리에 3, 4군 데나 두피출혈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장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상처들은 박군이 물고문을 당할 때 몸부림치다가 생긴 것이지 절대로 다른 고문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 한 수사관이 두 팔을 올린 박군의 거드름이 밀으므로 넘어져 목 뒤

권에 반대하는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아 억지로 공산분자로 조작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억어매고 기에 필요한 억지 자백을 얻으려고 고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정부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제거 골목시키기 위 한 수단으로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째로 이렇게 고문과 폭행을 일삼음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소수로 전락시켜 이 사람들만 제거하면 현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고문을 불가결한 통치수단으로 제도

에서 각지를 기고 다른 수사관이 한 손으로 박군의 뒷통수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우장사라면 모르지만 이런 학생의 몸으로써 도저히 반항하기가 어렵고 뒷통수에서 피가 날 정도의 타박상은 몸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육조턱에 부딪쳐 생길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고문에는 기본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온갖 폭행을 가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있을 때 물고문을 전기고문의 「코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군이 물고문을 당할 때는 이미 힘이 빠져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심히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반항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실황을 내가 그림으로 그려 보았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두 경찰관이 두팔을 쫓고 한 경찰관이 머리를 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학생이 몸부림을 칠 수 있었겠읍니까 반항을 할 수 있었었읍니까?

우리 신민당은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박군의 이와같은 상처가 물고문에 항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생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전기고문이나 다른 가혹행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정찰이 전기고문을 해 놓고도 박군의 사인율 경부압박질식사라고 조작하는 그 이유는 전기고문이 밝혀졌을 때 치안본부 대공본실에 고문을 하기 위한 전기장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고 그것 때문에 고문이 제도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인율 조작발표했고, 그 증거를 영원히 인멸시키기 위해서 박군을 해부한 지 불과 10시간만에 가매장을 알고 급히 화장을 해버렸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崔致煥위원 崔致煥위원입니다. 전투정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정찰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데 그 위아라 전투라는 것을 붙여서 정찰이라는 낱말을 붙인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투정찰이라는 것이 하는

제도적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먼저 자금의 고문이 더욱 혹독하고도 무차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집권 음모를 위한 수상내각제를 통과시키려는 계산된 정국포석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국구도에 가장 장애세력이 될 수 있는 학생 근로자 민주양심세력을 무력화시킬 필요와 더구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조급함 때문에 고문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는 물고문용 고문장비로 판명이 났고 소위 침대라는 그 침성판은 전기고문장치로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전내무 장관은 고문장비는 일체 없으며 예산지출항목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고문장비가 설치될 수 있었던 법적근거와 고문장비 항목 및 수량액 수 그리고 80년 이후 고문장비 구입을 위해 사용된 예산액과 영출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朴鍾哲군이 몇 시간 만에 죽어서 나온 남영동 대공본실과 군사조사기관에서 자행한 전 민청련 金權泰의장에 대한 전기고문, 물고문, 서울 노동운동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산악에 항만에 가 있는 사람보다 도시에 있어서 학생 데모나 대치하는 전투정찰이 많은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투정찰이라는 말입니까? 이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 자체가 고문도 강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부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투정찰이 5~6만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바꾸시오.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시오.

특수정찰로 하든지 기동정찰로 하든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싸우자는 것입니까? 전투라면 죽지 않으면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고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포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나는 그 고문관계를 볼 때 고문은 조사형사들과 전투정찰의 의식 동원합 金文洙씨 등에 가한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에 대한 재수사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5.3 인천사태 관련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고문 받은 權양의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상습적으로 성고문이 자행되었다고 알고 있고 금번 전국대 농성사건에서도 구타와 고문의 전횡했음뿐 아니라 여성에게는 변형된 성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하며 정찰 독자적으로 고문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자성의 기회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根祖씨를 고문치사케 한 김만희 경위 高淑鍾 鄭載巴 金詩勳씨 등 수많은 선량한 시민을 불구의 몸으로 만든 고문형사들, 전 정찰관 박호영씨 등 10여명을 고문치사하여 살인자로 만들었던 金모 김사,尹노파 예금증서를 훔쳐던 河모형사와 감독책임자들이 전부가 석방 출감 보석됐는가 하면 당시 최고 위 치안책임자들은 오히려 진급되고 또 는 영전되는 이러한 책임질 줄 모르든 아니 비인권적이고 국민생사적 인사가

구조가 문제인데다가 1년 내내 실적외 주로 과학적인 자백을 받지 아니하고 단속에 공명심과 더불어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정체를 시키고 사건을 위해서 쟁기고 이것을 잡아내라고 추치고 이럼으로 인해서 고문이 자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許清一위원 이 사건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찰의 자세는 국민을 실망시키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고문수사관 2명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똑같은 옷을 입혀서 10여명을 호송함으로써 관련 수사관의 노출을 보호해 주는 자세는 전혀 정찰의 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또 도로아미타 불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내에서 동료를 보호하려는 우정은 그것 좋습니다. 또 해당 수사관의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된 인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찰은 어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호했습니까?

▲文正秀위원 신민당의 文正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군 고문살인사건을

전국 朴鍾哲군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불공정하고 비상사적인 인사는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 鄭鎔溶 본인은 평소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천적의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인권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박탈되거나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내무부장관 부임 이후 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받고 또 직접 사후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한 자연인으로서의 인생관과 공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번 사건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명되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굳게 다짐해 왔습니다.

· 불의의 실수로 그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진실 있을 것이다. 그대로 국민들의 소상하게 밝혀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반문명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인 자신은 물론 산하 정정청관들이 대외과성하여 이 땅에서 고문이라는 용어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내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고 굳게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문받았던 사람들의 진상을 공개하고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다수 사람들의 소재를 확인하여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물으셨읍니다. 본인이 장관으로 부임한 지 일천하여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고 또한 파악도 못했읍니다. 따라서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路周위원 장관! 내가 장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에서도 나는 보고들은 바가 없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 아직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장관은 이 엄청난 사고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사회 여론이 어떻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신문문을 안보니까? 참모들 뭐 해요! 장관한테 일일이 그날그날 신문에 나왔으면 이런 신문문을 갖다 주고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고 갖다 주어야 해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잘 알겠읍니다. 文國鎭교수의 최신 법의학에 의하면 질

치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에서 고문장비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없읍니다. 병리조직검사에서도 다수의 결핵결절이 인정되는 바 이 병변은 결핵이 완치된 흔적이 아니라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활동성 병변으로서 이러한 결핵병변이 야기된 출혈이 기관지를 따라 유입되어 우폐하엽하면에 저류됨으로써 발생한 출혈반이므로 전기고문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文正秀위원 장관! 내가 오늘 질문을 한 내용은 경찰은 朴鍾哲군의 사인 이 물고문을 할 때 뒤에서 눌리고 위에서 머리를 유조에 넣을 때 경부압박질 식사라고 사인을 발표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에 전기고문에 관계된 폐의 출혈을 물었을 때는 전기고문에 의한 폐출혈이 아니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폐출혈점이 어떤 유조직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서 출혈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었다 말ियो.

그러면 경찰이 애초에 사인으로 규명하고 발표했던 경부압박질식사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경부압박질식사고 법무부는 폐출혈관계를 가

식사예 이르는 과정은 호흡근란기·경련기·무호흡기·총말호흡기의 4 단계를 거치면서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경부장기에 압박이 가해지면 산소 차단에 의해 질식사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고문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朴鎭宗 조사한 趙漢慶의 姜鎭圭경사 등에 대한 신문조사 결과와 또 부검감정결과 등등의 의해서 전기고문을 한 사실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읍니다.

다음은 黃路周위원님과 許淸一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사항입니다. 朴鍾哲군을 가매장하지 않고 서둘러 화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셨읍니다.

87년 1월 15일 부검을 마친 후 朴鎭宗의 부모가 불교신자로서 일반적 장례관습인 3일장으로 불교양식에 따라 화장을 하겠다 하고 부모님께서 바랐기 때문에 87년 1월 16일에 장례를 치렀을 뿐 黃路周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증거인멸이나 또는 기타 뜻들을 가지고 화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습부위가 짓눌려서 그렇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법무부의 말대로 출혈이 전기고문이 아닌 출혈이었다고 하면 경찰이 발표한 사인중에 목부위 질식사,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 목부위 질식사라고 하면 폐출혈은 그것 법무부의 보고가 엉터리 아닙니까?

▲내무부장관 鄭鎬溶 다음에 고문경찰관을 똑같은 부장으로 이송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반성함이 없이 경찰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그 지휘관부를 인사조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치안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겠읍니다. 趙漢慶 경우는 73년 5월부터 13년 8월 7일까지 姜鎭圭경사는 79년 8월부터 7년 5개월 동안 대공 수사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대공사범을 검거 조사하였으며 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가능한 한 노출이 안 되도록 한 것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본부장 李永昶 제가 만사를 제치고 청사내의 순시도 한번 못한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렇게 이 문제가 의혹에 싸일 줄 알았으면 가매장해서 차후 증거로 사용할 것을 하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한 두 경찰관의 신상을 밝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趙漢慶경위는 치안본부 대공수사 5과 소속으로서 경기도의정부시 낙양동 255번지가 본적이며 주소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135-13에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로서 대공분야에 약 1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사항은 처와 1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또한 경사 姜鎭圭는 대공수사 5과 소속으로서 대공업무에 약 7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적은 경남 의령군이며 주소는 서울 관악구에 있습니다. 가족사항 역시 처와 자식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실에 침대를 설치한 것은 전기고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조사실에 침대를 설치한 것은 전기고문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피의자는 20일이라는 장기간 조사하기 때문에 고문중 피의자가 잠잘 수 있는 편의시설로 설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朴鎭宗의 아버지 되시는 그 어른을 제가 만나 뵈옵고 정중하게 전체 경찰을 대표해서 조의를 표해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또한 이 朴鎭宗의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지게 좋은 계기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잘못은 잘못대로 직책을 강하게 해주시고 일방 반면에 절대 다수의 성실한 그리고 가난속에서 도 무뎠히 24시간 잠 못자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는 그러한 경찰관들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을 하실 때에 앞으로 변함없이 배전의 사랑과 지도를 가지고 육성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고 朴鍾哲군을 연행한 이유는 86년 10월 31일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 데모시 인원동원책으로서 대모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에 가담한 집시범위반혐의와 국가보안법위반피의자로 수배중에 있는 朴鍾奎을 은닉하고 도주를 방조한 그러한 범인은닉 및 도주방조혐의로서

연행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朴鍾哲 군과 朴鍾雲 학생과의 관계는 86년 11월 24일 朴鍾哲 군은 朴鍾雲을 자기 하숙방에 1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지도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87년 1월 8일 또한 도피를 하면서 전전하는 데 쓰라는 명목으로 1만원을 朴鍾雲에게 수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은 12월 1일 구속송치한 서울대 민투위원장 남태범, 그리고 12월 23일 구속송치한 김태호의 진술로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그 1만원 그것이 오늘날의 돈이냐? 이러한 어디에서 들은 기연의 남이다?는 학생들의 1만원이라는 것은 재벌의 1억원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 朴鍾哲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되지만 여러가지 방조 은닉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혐의를 받아서 임의동행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깐 빨리 의뢰기구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해서 10분만에 증대 吳演相의 수가 11시 40분에 대공수사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뒷의사가 진단한 결과 이미고 朴근은 사망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상의는 벗겨졌고 하의는 잠옷 비슷한 흔히 이야기하는 고문복이라는 옷을 잡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서너평되는 수사관실에는 목욕탕에서 남은 물이 흘러 있었고 또 흔히 얘기하는 나무침대 그것을 고문을 당한 사람은 침상대라고 합니까? 거기 에 朴근은 눕혀져 있었고 또 하의를 벗기니까 똥을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더 살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공수사반 간부 및 7, 8명의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해도 반 의지로 중앙대학부속병원으로 사체를 12시 50분에 이송을 했습니다. 중앙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죽은 환자가 때문에 치료도 하지 않았을

동일 13시 50분에 동분실요원 3명과 의사 한명이 사체를 경찰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15일 19시경 부검차 한양 대학병원으로 다시 또 사체를 이송했습니다. 15일 21시 5분에 한양대학병원에서 검사 安商守 임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黃迪駿 의사의 집도와 한양대학 단정의사 朴東皓교수 이분은 마취 의사이고 이제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부를 한번도 해본 경험의 없던 사람의 임회하에 또 가족대표로서는 朴월길 고 朴근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임회하에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후 朴鍾哲군의 사체는 다시 대공분실요원들에 의하여 15일 23시 50분 경찰병원으로 재안치되었습니다. 16일 7시경 대공수사본부 禹鏡정이 경찰병원장으로서 진화를 했습니다. 오늘 사체를 화장할 것이니까 출고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8시경에 대공수사요원 수명이 가족들과 같이 사체를 출고하여 9시경 벽계화장장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체를 부검하고 난 이후 黃 박사는 안검사에게 의상으로 부사 본명

하고문에 의한 살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정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폐출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죽자 범인도 체포하기도 전인 그날 아침에 시체를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증거인멸을 위하여 화장장에 화장시킨 것을 방조했습니다.

또 경찰병원장인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희들 조사단이 경찰병원에 갔을 때 분명하게 원장하고 거기에 있는 간부들은 대공수사본부에서 보내는 시체를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가 없는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공수사본부에서는 수시로

많은 시체를 경찰병원에 보내다는 말입니까? 또 대공수사본부 禹鏡정이 아침 7시에 경찰병원장의 집으로 전화를 해 갖고 시체를 출고하라 하면 출고하고 또 왜 경찰병원에 죽은 시체를 가져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분명히 중앙대학병원이나 한양대학병원은 보안유지가 되지 않고 경찰병원이라야만이 보안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링게르라는 의약품은 10병을 사 갖고 들어가더라도 입고종이 있고 출고종이 있는데 치안본부 대공수사본부가 어떤 기관인지 몰라도 전화 통화에 의해서 시체가 나갔다 들어와도 신원도 알

수 있고 부부인제도 모르고 이런 병원 운영을 하는 그 책임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崔洛道의원 하느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할 때에 유독 사람만을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해서 인권을 천부의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鄭장관께서 취임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는가 하는 자탄을 지극히 당연한 말로 들었습니다. 鄭장관 鄭鎬鎔 신민당 특별조사 위원회에 지극히 협조하여 대공수사실내 부시설의 공개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의 특수목적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방 켈 (22층)

연회장

BANQUET

- 회갑연
- 약혼식
- 생일파티

• 편리한 교통과 저렴한 비용으로 격조 높은 모임원하시면 지금 곧 코리아나 호텔로 연락 주십시오.

예약 : 730-9017 (직)
730-9911 (교) 825



코리아나호텔

대공분야의 내부시설의 공개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검토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에 고문기구나 시설은 일체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이러한 것이 만약 약에 아직까지 있다면 즉각 폐기처분하겠습니다.

朴君 치사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는 질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사망을 예시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진상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공호흡 등 소생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인근 중앙대학부속 용산 병원의 의사를 불러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애원하였던 일련의 사실 등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盧承煥위원 鄭장관! 하나만 물읍시다. 우리 崔洛道위원이 질의하신 金大中씨 연금관계에 관해서 그 답이 범법 다시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정치활동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적 어느 법적근거에 있습니까?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

조항을 조항을 대주세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자세한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정화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承煥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당법 제42조의 2 정당관련금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조항입니다.

▲盧承煥위원 그것은 일전에 지금은 치안본부장이 되셨지만 추치안본부장이시경국장으로 계시적에 한달이면 스무날씩 金大中씨에 대해서 연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鄭장관이 대답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데 정치를 못한다는 조문이 어디 있느냐 말아야.

▲내무부장관 鄭鎬溶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 대답을 못했습니다마는 조항을 확실하게 찾아서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

▲安東善위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일반 어느 법률에도 가택연금하라는 법의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경찰 무슨 집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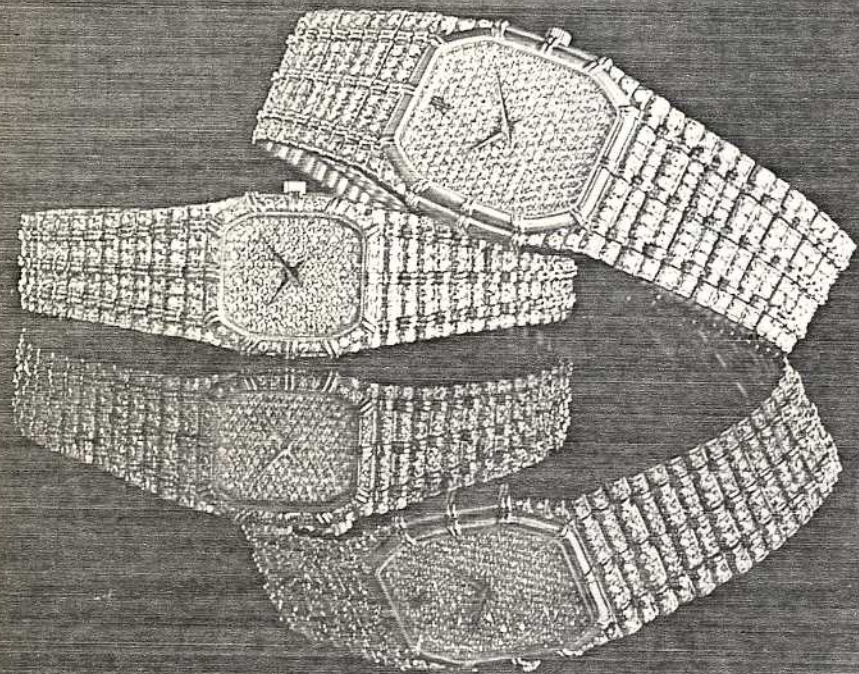
金大中씨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말이에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다음 기독교방송이 고문중단 생방송을 하는데 중단한 것은 내무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본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부소관이 아닙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洛道위원 형법 163조에 원래 번사체는 그 자리에 놔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검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번사체를 이미 죽었다고 사망확인서를 확인의사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갔다 이거예요.

▲내무부장관 鄭鎬溶 그 과정은 제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 중앙병원에 옮긴 것은 어떻게 병원에 가 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해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洛道위원 용산병원에 뭐 예수가 있습니까? 또 사체처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체처리의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사체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최신 모델인 "뱀부" (Bamboo). 위 모델은 황금시계로서 차판과 시계줄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다.

보통시계가 아닙니다.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보석 공예품입니다.

전통과 맛이 담긴 불후의 명품,
 오디마피게(Audemars Piguet)!
 고집스런 장인정신이 창조해낸
 예술적 향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분은 많아요
 갖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Audemars Piguet
 SWITZERLAND
 la plus prestigieuse des signatures